

도보

선 람	기관의 장

제2448호 2007년 3월 2일(금)

훈 령

충청북도훈령 제1229호 충청북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3

고 시

충청북도고시 제2007-42호 농업진흥지역변경고시·····5

공 고

충청북도공고 제2007-135호 제4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공고·····6

충청북도공고 제2007-136호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7

충청북도공고 제2007-137호 도로사용개시(폐지)에 관한 공고·····16

충청북도공고 제2007-138호 전기사업 양도·양수 공고·····19

시군 행정

△ 고 시

청주시고시 제2007-2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정정고시···20

청주시고시 제2007-22호 청주도시계획시설(저수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22

청주시고시 제2007-23호 청주도시계획시설(사천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23

☞ 뒤쪽 이어서

회
람

--	--	--	--	--	--	--	--	--	--

청원군고시 제2007-19호 오창 제2지방산업단지 예정지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고시·····	27
영동군고시 제2007-13호 군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31
영동군고시 제2007-14호 군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34
음성군고시 제2007-10호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	37
△ 공 고	
제천시공고 제2007-296호 공인등록공고·····	39
청원군공고 제2007-235호 토지보상계획공고·····	40
청원군공고 제2007-254호 토지수용재결 신청사항 열람공고·····	46
괴산군공고 제2007-106호 등록·폐기 공인 공고·····	47
음성군공고 제2007-249호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및 재등록 공고···	54

훈 령

충청북도훈령 제1229호

충청북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7년 3월 2일

충 청 북 도 지 사

충청북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충청북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에 관한 지역 등의 지정·결정협의
2. 법 제14조·제17조·제20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 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협의·산지전용 허가의 취소
3. 법 제25조, 법 제27조2항 및 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광구안에서의 채석허가 및 채석허가의 취소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기	정
<p>제7조(위원회 심의사항)위원회는 법 제2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유림과 사유림 산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사업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5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에 관한 지역등의 지정·결정협의</p> <p>2. 법 제14조·제17조·제20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면적 5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협의·산지전용 허가의 취소</p> <p>3. 산지관리법 제25조, 법 제27조2항 및 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채석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채석허가, 광구안에서의 채석허가 및 채석허가의 취소</p> <p>4. (생략)</p>	<p>제7조(위원회 심의사항) -----</p> <p>-----</p> <p>-----</p> <p>-----</p> <p>-----</p> <p>-----</p> <p>-----</p> <p>1. -----</p> <p>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p> <p>-----</p> <p>-----</p> <p>2. -----</p> <p>-----</p> <p>5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p> <p>-----</p> <p>3. 법 제25조-----</p> <p>-----</p> <p>-----</p> <p>-----채석허가-----</p> <p>-----</p> <p>4. (현행과 같음)</p>

고 시

충청북도 고시 제2007 - 42호

농업진흥지역변경고시

농지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충청북도 일원의 농업진흥지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7년 3월 2일
충청북도지사

- 1. 변경년월일 : 2007. 2 . 20 .
- 2. 농업진흥지역 변경사항
 - 가. 농업진흥지역 면적

(단위 : ha)

구 분	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당 초	427,542	65,253.0	335,440	51,623.2	92,102	13,629.8
변 경	427,406	65,249.9	335,304	51,620.1	92,102	13,629.8
증 감	△136	△3.1	△136	△3.1	-	-

시·군별	계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청원군	67,553	11,386.6	59,895	10,168.8	7,658	1,217.8

나. 변경내용

【농업진흥지역 해제】

- 청원군 부용면 갈산리 118-1번지 외 86필지 12.2ha
-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304-2번지 외 114필지 3.5ha
- ※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

-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 694번지 외 65필지 12.6ha
- ※ 농업진흥지역밖 →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으로

다. 농업진흥지역 지정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지정도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 3. 관계도면 및 토지조서는 청원군 (농정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열람하게 합니다.

공 고

충청북도 공고 제2007 - 135호

제4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공고

관광진흥법 제49조에 의하여 제4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2일
충청북도지사

□ 계획의 개요

가. 적용기간 : 2007 ~ 2011 (5개년)

나. 범 위 : 28개 지구 10,764,034㎡

(단위 : m²)

지구명	부지면적	소재지	개발방향
28지구	10,764,034		
칠금	295,000	충주시 칠금동	세계무술테마체험 및 스포츠중심 관광지
충주호체험교리	31,943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역사문화와 수변공간이 결합된 체험관광지
능강	333,519	제천시 청풍면 교리,복진리	자연경관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지
금월봉	136,818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자연휴양 관광지
만남의광장	88,119	제천시 금성면 월굴리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지
제천온천계산	147,440	제천시 청풍면 교리	수상모험체험형 관광지
속리산레저장	296,700	제천시 수산면 내리,적곡리	한방테마형 온천관광지
송호	135,806	제천시 청풍면 계산리	공간별 테마형 휴양관광지
수옥정	130,191	보은군 내속리면 중판리	휴양중심의 체류형 관광지
괴산강	198,705	보은군 안내면 장계리	호반관광 및 유원시설 확충
무극전적지	292,231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수변휴양 가족관광지
천동	229,469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역사체험 및 휴양관광지
다리안	238,132	괴산군 괴산을 검승리	청소년 중심 체류형 관광지
온달	18,481	음성군 음성을 소여리	전승기념 테마형 관광지
충운온천	120,982	단양군 단양읍 천동리	동굴 체험유도형 관광지
능암온천	153,835	단양군 단양읍 천동리	가족 및 청소년을 위한 휴양형 관광지
돈산온천	152,050	단양군 영춘면 하리	온달장군 역사테마형 관광지
KBS제천촬영장	291,470	충주시 양성면 돈산리	온천 휴양 관광지
만퇴산지	198,794	충주시 양성면 능암리	온천 휴양 관광지
사인암	876,556	충주시 양성면 돈산리	온천 휴양 관광지
밀레니엄타운	110,060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영상테마파크
구병산	2,567,194	진천군 백곡면 대문리	종합 휴양 관광지
늘머니	96,639	괴산군 청천면 지촌리	휴양 문화 관광지
에코세라피	99,441	단양군 대강면 사인암리	가족단위 휴양 관광지
	577,673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도시근교 관광지
	144,250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속리산과 연계한 사계절형 관광지
	1,807,989	영동군 영동읍 매천·산악리	과일을 주제로한 종합적인 테마형 관광지
	994,547	제천시 봉양읍 봉양삼거리	한방약초 주제의 테마형 관광지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청(관광진흥과 043-220-4681) 및 시·군(문화관광과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고 제2007 - 136호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2일

충청북도지사

1. 조 례 명 :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의 정비
 - 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120인에서 250인 이내로 확대
 - 위원장을 현행 건설재난관리본부장에서 위원회 관련 부서장인 균형발전본부장으로 변경
 - 대안턴키입찰에 따른 별도의 심의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위원회의 기능을 지방계약법령에 맞추어 정비
- 사전심의에 따른 기술검토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월 일까지 충청북도지사(참조:지역개발팀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지역개발팀(전화번호 220~3473, FAX 220~346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를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균형발전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업무를 담당하는 과·팀장이 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정수의 10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도 본청의 5급이상 공무원
 2.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3.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4.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그 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6. 건설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중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 ④ 도지사는 제10조제3호에 의한 설계적격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당해 안건의 심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설계에 계산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
-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제98조제4항 및 제10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14조 제3항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를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중에서 선임하거나 호선 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4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⑧소위원회 회의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0조제3호에 의한 설계적격심의의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의 조명 “참석수당 등”을 “수당 및 여비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당 및 여비 :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한 금액

2. 사전심의(기술검토) 수당 : 설계심의 1안건당 50,000원 이하

②제10조제3호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의 설계심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기술검토비, 수당 및 여비 등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2항중 “심의신청서”를 “위원회의 심의전까지”로 하며, 같은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건설공사 설계 등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는 별표의 기술심의수수료 산출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도 및 도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술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제15조의2 관련)

구 분		수수료 산출기준(1건당)
1. 조례 제10조 제1호·제2호의 심의사항		위원 수×(사전심의비+회의참석수당)
2. 조례 제10조 제4호에 의한 입찰방법 심의사항		위원 수×회의참석수당
3. 조례 제10조 제3호의 심의사항	가. 입찰안내서 심의	위원 수×(사전심의비+회의참석수당)
	나. 일괄입찰 대안입찰 공사의 설계 적격심의	[기술위원 수× {여비+(사전심의비×응찰업체 수) +회의참석수당}]+[(기술위원 수+평가위원 수)×(여비+회의참석수당)]
3. 그 밖의 심의사항		위원 수×(사전심의비+회의참석수당)
<p>비 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전심의비 : 1건당 50,000원 2. 회의참석수당 :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금액 3.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란을 적용한다. 4. 응찰업체 수는 일괄입찰대안입찰 공사의 입찰에 응한 업체의 수를 말하며, 대안입찰공사의 경우 원안은 1개의 업체 수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건설기술관리법</u>」 제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u>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u>120인</u>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u>건설재난관리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업무담당과·팀장이 된다.</u></p> <p>③위원은 <u>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근무하는 5급이상 공무원과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12인을 초과 할 수 없다.</u></p>	<p>제2조(위원회 구성) ①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u>250인</u>이내의 위원으로 한다.</p> <p>②위원장은 <u>균형발전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업무를 담당하는 과·팀장이 된다.</u></p> <p>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u>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정수의 10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건설업무와 관련된 도 본청의 5급이상 공무원</u> 2. <u>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u> 3. <u>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u> 4. <u>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그 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u> 5. 「<u>국가기술자격법</u>」에 의한 <u>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u>」에 의한 <u>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u> 6. <u>건설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중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u>

현 행	개 정 안
<p>④ (신설)</p>	<p>④ 도지사는 제10조제3호에 의한 설계적격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당해 안전의 심의종료시까지로 한다.</p>
<p>제3조(위원장의 임무) ① (생략)</p> <p>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3조 (위원장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심의범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다만, 설계에 계산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p> <p>1. (삭제 2001. 6. 15)</p> <p>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및 신기술 적용여부</p> <p>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p>	<p>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설계에 계산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의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제외한다.</p> <p>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제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p> <p>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p>

현 행	개 정 안
	<p>다. <u>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u></p> <p>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p> <p>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본문·제98조제4항 및 제10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p> <p>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p> <p>5. 다른 법령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p> <p>6.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p>
<p>제14조(소위원회 등) ①~② (생략)</p> <p>③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u>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u></p>	<p>제14조(소위원회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u>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중에서 선임하거나 호선 한다.</u></p>
<p>④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u>소위원회위원장이</u> 위원회 위원중에서 지명한다.</p> <p>⑤~⑦ (생략)</p> <p>⑧소위원회 회의는 <u>제6조제2항의</u> 규정을 준용한다.</p>	<p>④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u>위원장이</u> 위원회 위원중에서 지명한다.</p> <p>⑤~⑦ (현행과 같음)</p> <p>⑧소위원회 회의는 <u>제6조의</u>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u>제10조제3호에</u> 의한 설계적격심의회 의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출장수당 등) 도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1. 일비 및 여비 :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한 금액</p> <p>2. 사전심의 수당 : 설계심의 1안건당 20,000원 이하</p> <p>② (신설)</p>	<p>제15조(수당 및 여비등) ①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수당 및 여비 :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한 금액</p> <p>2. 사전심의(기술검토) 수당 : 설계심의 1안건당 50,000원 이하</p> <p>②제10조제3호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의 설계심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기술검토비, 수당 및 여비 등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제15조의2(수수료)①건설공사 설계 등을 심의요청시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 제19호 설계심의수수료 산출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심의신청시 충청북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p> <p>③ (신설)</p>	<p>제15조의2(수수료)①건설공사 설계 등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는 별표의 기술심의수수료 산출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위원회의 심의전까지 충청북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p> <p>③도 및 도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제16조(시행규칙)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p>	<p>제16조(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충청북도공고 제2007 - 137호

도로사용개시(폐지)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용개시(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3. 2.

충 청 북 도 지 사

1. 사용개시 구간

일련 번호	도로의 종 류	노선명	사용개시 구간			주 요 경과지	개시일자	비 고
			시 점	종 점	전용구간 (km)			
1	지방도	514호 (이원-황간)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리 761-3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리 195-6	0.204	금계1교	2007. 03.02	이설도로 준 공
2	국가지원 지 방 도	49호 (영암-원주)	영동군 황간면 소계리 228-3	영동군 황간면 소계리 산24-6	0.793	소계 육교	2007. 03.02	이설도로 준 공

2. 사용폐지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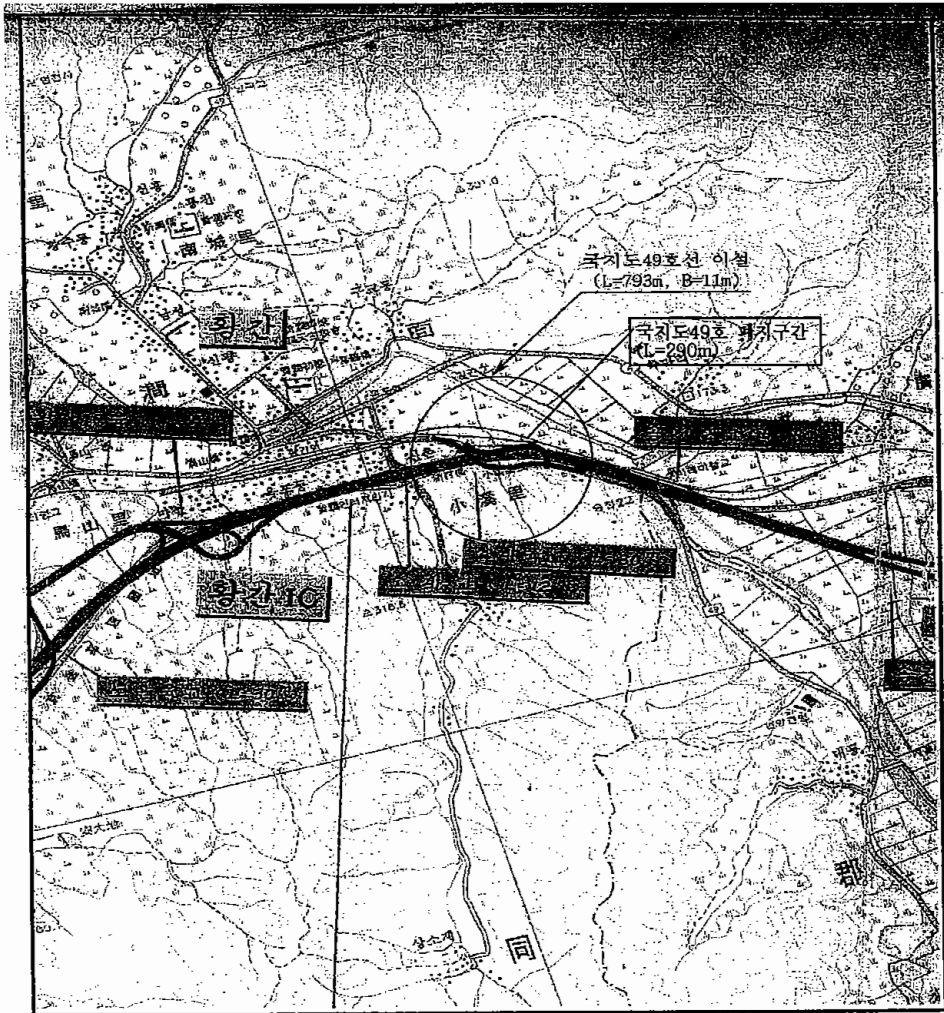
일련 번호	도로의 종 류	노선명	사용폐지 구간			주 요 경과지	폐지일자	비 고
			시 점	종 점	전용구간 (km)			
1	국가지원 지 방 도	49호 (영암-원주)	영동군 황간면 소계리 273-5	영동군 황간면 소계리 산25-3	0.290	소계 육교	2007. 03.02	고속도로확장 으로 이설

3. 비 고 : 관련 도면은 충청북도 건설재난관리본부 도로정책팀(전화 043-220-4123)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을 제공합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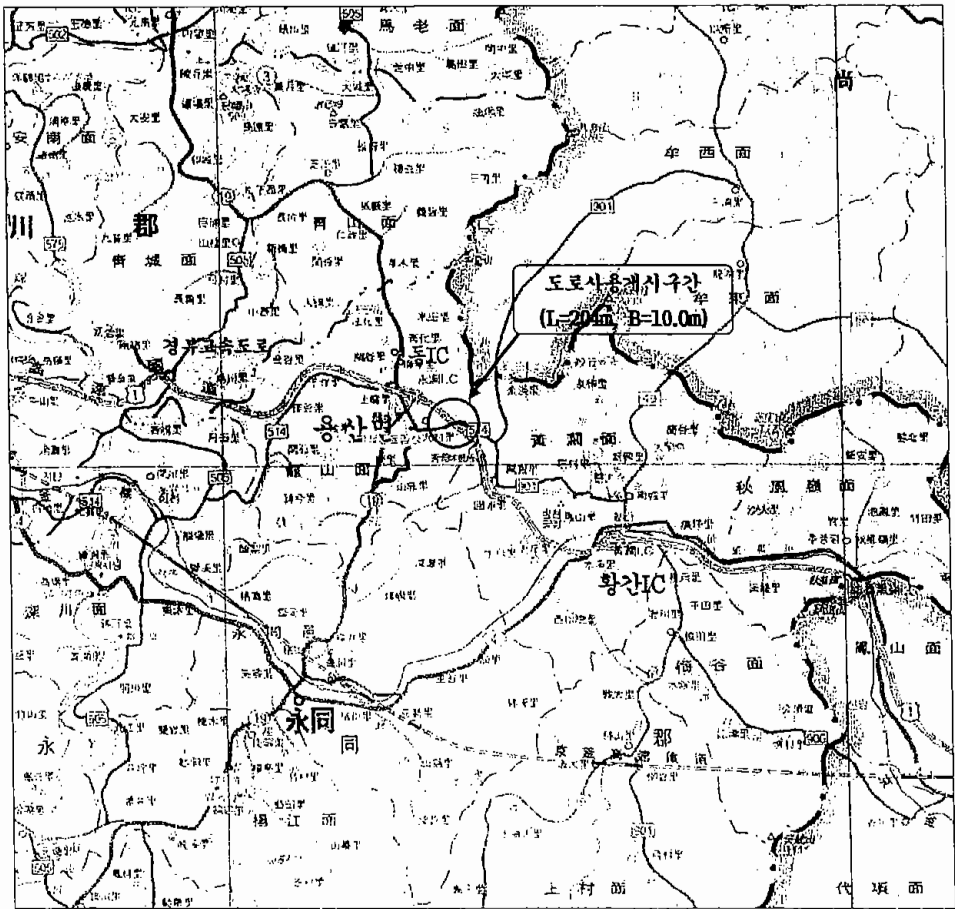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도로사용개시 폐지공고 위치도

- 위 치 : 영동군 황간면 소계리 228-3 ~ 산24-6
- 사업규모 : 사용개시 L= 793m, W= 11.0m(폐지구간 L=290m)
- 공 사 명 : 영동군 황간면 소계리 국가지원지방도49호선 이설공사



지방도 514호선 도로사용개시 폐지공고 위치도

- 위 치 :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리 761-3 ~ 195-6
- 사업규모 : 사용개시 L= 204m, W= 10.0m
- 공 사 명 :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리 지방도514호선 이설공사



충청북도공고 제2007 - 138호

전기사업 양도·양수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 양도·양수인가 신청을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2일

충 청 북 도 지 사

구 분	상 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전기사업의 양도·양수내용	양도·양수 일 자
양도인	옥천서원태양광 발전소	충북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1347	이육순	태양광발전사업 전부 (2kw×4기=8kw)	2007. 2. 27.
양수인	옥천서원태양광 발전소	충북 옥천군 동이면 평산리 1347	이철순		

시 군 행정**청주시 고시 제2007 - 21호****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정정고시**

청주시고시 제2007-16(2007. 2. 16)호로 기 고시된 청주 도시계획시설(도로 : 신봉동 우림필유아파트 주변)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토지세목을 정정고시 합니다.

2007. 3. 2.

청 주 시 장

○ 토지세목 정정공고 내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이해관계조서(정정)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이해관계조사서(정정)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동	지번	지목	지적 (㎡)	면적 (㎡)	토 지 소 유 자		건물 및 지장물			건물 및 지장물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용도	구조	수량(㎡)			주 소	성 명		
39	신봉	209-12	장	650	650		충주시 흥덕구 신봉동 209-1	(합)원성 회학	공장	시멘트벽돌	23㎡	충주 흥덕 신봉동 209-1 (합)원성 회학	(합)원성 회학		양초			
									설비시설	철근콘크리트	104㎡							
									당장	플럭조	22㎡							
									웬스	H=1.8	48m							
									공장	시멘트벽돌	23㎡					충주 흥덕 신봉동 209-1 (합)원성 회학	(합)원성 회학	근저당권설정 (주)국민은행 110111-2365321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청주기업금융지점
									설비시설	철근콘크리트	104㎡							
당장	플럭조	22㎡																
웬스	H=1.8	48m																

청주시고시 제2007 - 22호

청주도시계획시설(저수지)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472-1번지 일원의 청주도시계획시설(저수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를 청주시청(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 3. 2.

청 주 시 장

1. 청주도시계획시설(저수지)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4	저수지	흥덕구 비하동 472-1번지 일원	6,392.7	감 1,174.7	5,218	2000. 6. 30.	향가골 저수지

2. 청주도시계획시설(저수지) 변경결정 및 지형고시도면 : 도보게재 생략

청주시고시 제2007 - 23호

청주도시계획시설(사천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 청주시고시 제2005-41호(2005. 5. 27.)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된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33-223번지 일원 사천근린공원내의 도서관 부지에 대하여 분할측량, 등록전환 및 지번합병 결과 토지면적이 일부 변경되었기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고시하고, 동법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를 청주시청 도시과(220-638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7. 3. 2.

청 주 시 장

■ 청주도시계획시설(사천근린공원 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승인조서
: 불 입

■ 청주도시계획시설(사천근린공원 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승인도면 : 생략

■ 청주도시계획시설(사천근린공원 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승인조서

1. 조성계획 총괄조서

구 분	시 설 내 용	시 설 면 적(㎡)				비 고
		부 지		건 축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계		31,798.7	31,798.7	2,530.55	2,624.96	
도로 및 산책로	산책로 및 연결로	937.2	937.2			
기 반 시 설	진입광장 포장광장 진입부계단	975	975			
유 회 시 설	어린이모험놀이터	1,782	1,782			
운 동 시 설	체력단련장 다목적운동장	0	0			
교 양 시 설	화 화 원 야생초화원 도 서 관	8,309	8,267	2,430.55	2,524.96	
편 익 시 설	화 장 실 파 고 라	642	642	50	50	
관 리 시 설	관리사무소	66	66	50	50	
녹 지		19,087.5	19,129.5			녹지율: 60.03%

3. 시설조서

시설 구분	시설 명	시설 번호	부지면적(㎡)		건축면적(㎡)		규모	비고
			기 정	변 경	연면적	연면적		
총 계			31,798.7	31,798.7	2,530.55	2,624.96		
산책로 및 연결로	소 계		937.2	937.2				
	산책로 및 연결로		937.2	937.2				
기반 시설	소 계		975	975				
	진입광장	A-1-1	600	600				
		A-1-2						
	포장광장	A-2	294	294				
진입부계단	A-3-2	81	81					
유희 시설	소 계		1,782	1,782				
	어린이 모험놀이터	B-1	1,782	1,782				
교양 시설	소 계		8,309	8,309	2,430.55	2,524.96		
	화 화 원	D-1	93	93				
	야생초화원	D-2	1,278	1,278				
	도 서 관	D-4	6,938	6,896	2,430.55	2,524.96		
편의 시설	소 계		642	642	50	50		
	파 고 라	E-1-5	579	579				
		E-1-6						
화 장 실	E-2	63	63	50	50			
관리 시설	소 계		66	66	50	50		
	관리사무소	F-1	66	66	50	50		
녹 지	소 계		19,087.5	19,129.5				
	녹 지		19,087.5	19,129.5				

■ 공원 세부시설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3	사천 근린공원	세부시설(도서관) 부지면적변경 6,938㎡⇒ 6,896㎡ 건축물 연면적변경 2,430.55㎡⇒ 2,524.96㎡	○사천근린공원의 도서관 부지에 대하여 분할측량, 등록전환 및 지번 합병 결과 반영

청원군고시 제2007 - 19호

오창 제2지방산업단지 예정지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고시

청원군 오창읍 주성리 일원에 추진예정인 『오창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사유재산권 행사에 따른 선의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고시 합니다.

2007. 3. 2.

청 원 군 수

1. 제한사유

산업단지 지정시 용도지역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산업단지지정 승인시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2. 제한지역 : 청원군 오창읍 주성리 일원 (송대,장대,창리,양지,괴정 일부포함)

3. 제한면적 : 1.5km² (약45만평)

4. 제한기간 : 2007년 3월 6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5. 제한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개발행위허가

6. 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

가. 기존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규모 안에서의 재축

나. 토지의 합병 및 분할

다. 기 건축허가(신고포함) 사항의 변경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사항

- 라. 가설건축물중 공사용 및 공공용 가설건축물
 마.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을 위한 개발행위 중 종전의 규모 범위내에서 시설물의 설치
 바. 허가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 개별법률에 의하여 이미 허가, 승인 등을 받은 공사 또는 사업. 다만,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되지 않은 건축물은 제외함
 사.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규모 범위내
 아.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시작일(2007. 3. 6) 이전에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7. 제한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8. 기타사항

동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청원군청 혁신전략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발행위허가 제한 관련도면은 청원군청 혁신전략팀, 건축과, 오창읍에 비치하였으니 가까운 곳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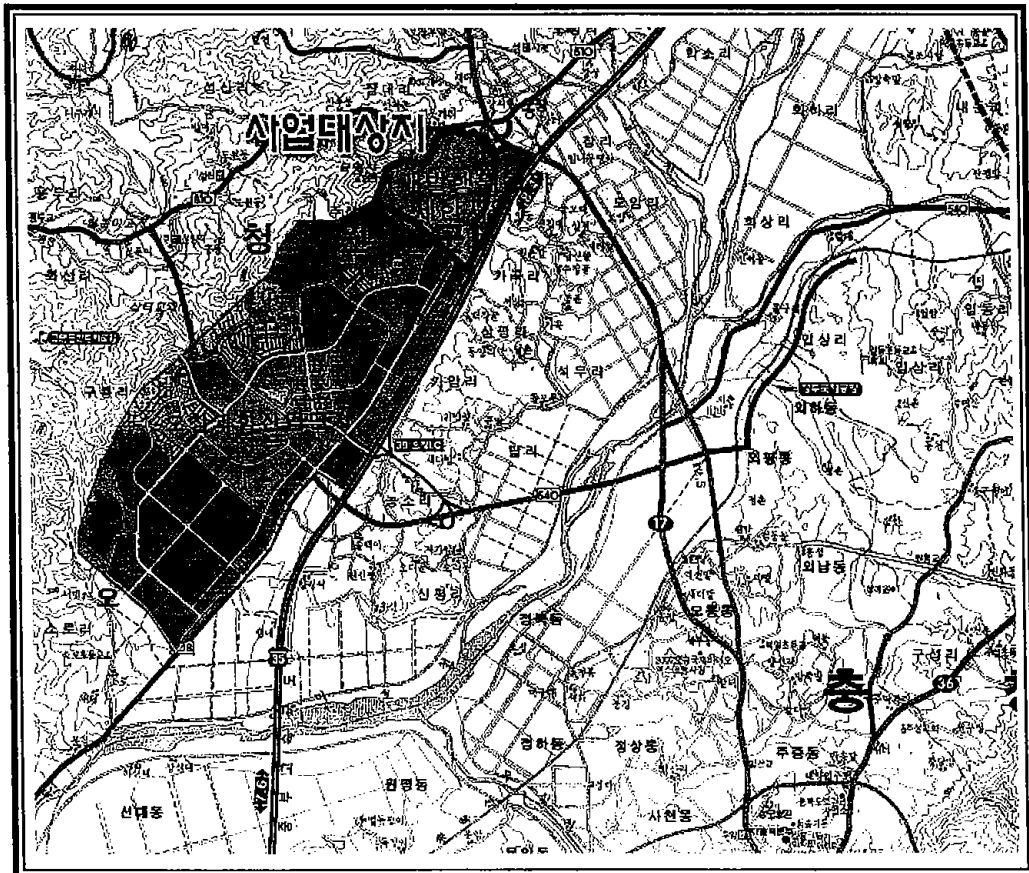
청원군 혁신전략팀 : 043) 251-3037

청원군 건축과 : 043) 251-3457

청원군 오창읍 : 043) 251-37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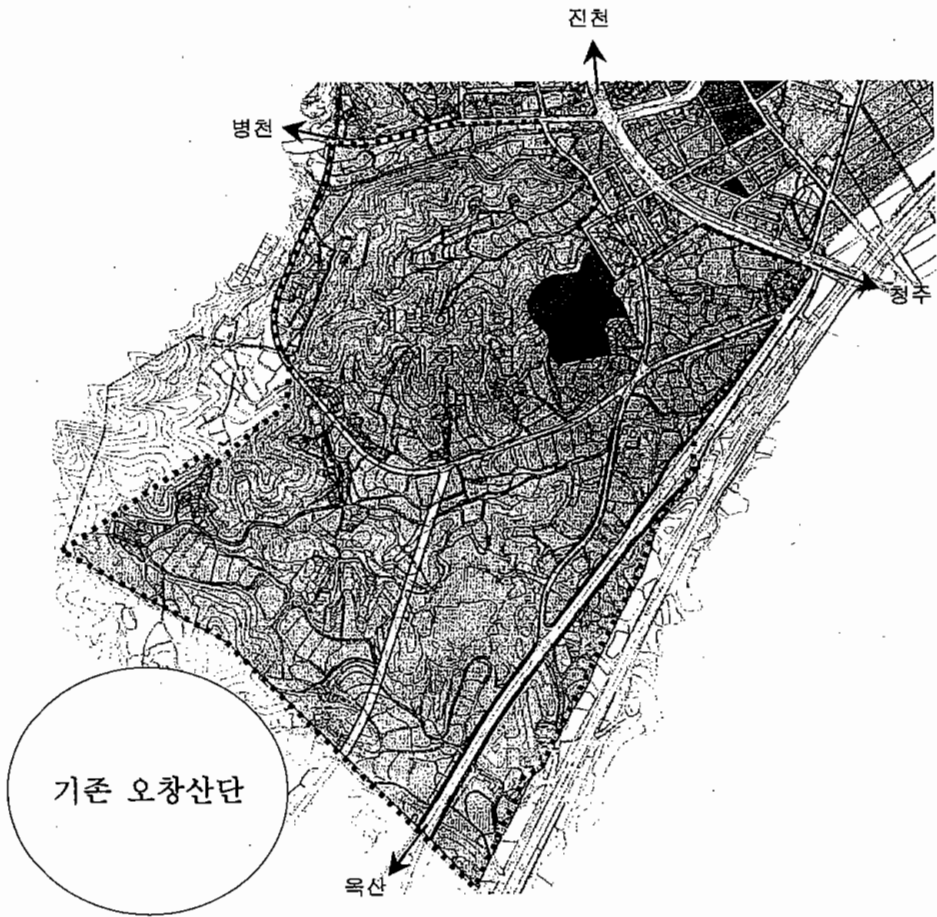
개발행위허가 제한 위치도

- 사업명 : 오창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 사업위치 : 청원군 오창읍 주성리 일원 (송대, 장대, 창리, 양지, 과정 일부포함)
- 조성면적 : 약 1,33km² (약 40만평)
- 제한면적 : 약 1.50km² (약 45만평)
- 사업기간 : 2007년 3월 ~ 2011년 12월
- 사업방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도

[제한기간 : 2007년 3월 6일 ~ 2008년 12월 31일]



영동군고시 제2007 - 13호

군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군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그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 3. 2.
영 동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698-6번지의 26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설계(금강아파트뒤)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구 분	사업량	면 적	시 점	중 점	비 고
소로2-6호	L=126M B= 8M	1,008㎡	영동읍 설계리 698-6번지	영동읍 설계리 708-3번지	
소로3-2호	L=254M B= 6M	1,524㎡	영동읍 설계리 743-16번지	영동읍 설계리 611-10번지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210-1
 - 성 명 : 영 동 군 수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07. 12. 31일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7. 기타 관련서류는 영동군청 도시개발과(☎043-740-3372)에 비치하고 있음.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관계인 주소 성명

일련 번호	토 지 소 제 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토 지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읍면	리	번지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영동	설계	698-6	대	1	1	영동군			
2	"	"	699-8	대	25	25	영동군			
3	"	"	702-3	대	62	62	영동군			
4	"	"	702-4	대	69	69	영동군			
5	"	"	703-1	답	107	107	영동군			
6	"	"	697-21	대	8	8	영동군			
7	"	"	704-1	전	51	51	국(재정경제부)			
8	"	"	705-1	답	243	243	영동군			
9	"	"	710-5	과	87	87	영동군			
10	"	"	710-1	답	72	72	영동군			
11	"	"	708-3	답	147	147	영동군			
12	"	"	872	도로	136	136	국(건설교통부)			
13	"	"	611-9	전	3	3	영동군			
14	"	"	611-10	답	185	185	영동군			
15	"	"	611-11	도로	13	13	영동군			
16	"	"	609-1	대	3	3	영동군			
17	"	"	610-4	답	62	62	영동군			
18	"	"	610-5	도로	30	30	영동군			
19	"	"	749-5	도로	5	5	설계리 771	손양기		
20	"	"	749-3	답	205	205	영동군			
21	"	"	752-1	대	13	13	영동군			
22	"	"	751	답	126	126	영동군			
23	"	"	868-9	도로	51	51	국(건설교통부)			
24	"	"	868-4	도로	10	10	국(건설교통부)			
25	"	"	743-16	전	203	203	영동군			
26	"	"	743-18	답	259	259	영동군			
27	"	"	853	천	480	480	국(건설교통부)			

영동군고시 제2007 - 14호

군계획시설(도로)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군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와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그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7. 3. 2.
영 동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362-5번지의 22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매천(영동지원-영동지청)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구 분	사업량	면 적	시 점	종 점	비 고
소로3-80호	L=299M B= 6M	1,794m ²	영동읍 매천리 362-5번지	영동읍 매천리 308-4번지	
소로3-86호	L=115M B= 6M	690m ²	영동읍 매천리 439-11번지	영동읍 매천리 362-5번지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210-1
 - 성 명 : 영 동 군 수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2007. 12. 31일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따로붙임
7. 기타 관련서류는 영동군청 도시개발과(☎043-740-3372)에 비치하고 있음.

음성군고시 제2007-10호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

음성 군관리계획(대소성분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고시 제 2007-28호(2007.02.02)로 결정고시 되었기에 같은법 제3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3. 2.
음 성 군 수

□ 지형도면의 고시 조서

1.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구분	도면표 사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기결정	금회결정	계	
신설	10-167	대소성분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 계획 구역	음성군 대소면 성분리 627-4외 62필	-	124,264	124,264	-

2.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 조서

○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결정조서

구 분	부지면적(m ²)	구성비(%)	비 고
계	124,264	100.00	
공업용지(공장용지)	83,185	66.94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11,762	9.47
	도 로	9,650	7.77
	관리사무실, 오수처리시설	2,112	1.70
녹 지 용 지	29,317	23.59	기준 20%

○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결정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내 용		
7	획지1 (20,172m ²)	용 도	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및 부대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획지2 (6,057m ²)				
	획지3 (8,749m ²)				
	획지4 (7,701m ²)				
	획지6 (6,891m ²)			건 폐 율	60 % 이하
	획지7 (6,612m ²)			용 적 률	120 % 이하
	획지8 (6,136m ²)				
	획지9 (6,994m ²)				
	획지10 (7,478m ²)			높 이	4층 이하
	획지11 (6,395m ²)				
	획지12 (2,112m ²)				

3. 관련도서를 음성군 지역개발과(043-871-3541~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제천시 공고 제2007 - 296호


공인등록공고

제천시공인조례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을 등록하고 동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2일

제천시장

- 1. 공인 등록 사유 : 인사행정정보화시스템 제증명 발급
- 2. 공인의 사용 : 2007. 2. 27.
- 3. 등록공인 인영 : 1개

공인명칭	제천시장인
공인인영	
서체 및 규격	113 × 112 (픽셀) 한글전서체(정방형)

청원군 공고 제 2007-235호

토지보상계획공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종암소하천 수해복구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 합니다.

2007. 3. 2.

청 원 군 수

1. 사업현황 : 공사명- 종암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사업량- 호안공 L=1,820m, 교량1개소
 시행자- 청원군수(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71-3번지)
2. 보상대상 토지 및 지장물 내역 : 붙임참조
3.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가. 가 간 : 2007. 2.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장 소 : 청원군 재난안전관리과 하천담당 (043-251-38523)
 청원군 미원면사무소 개발담당 (043-251-3707)
4. 보상시기 : 2007. 4. 1. 이후
5. 보상방법 : 본 공사에 편입되는 면적은 예상면적임으로 지적분할후 면적증감이 있으며, 보상절차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보상
6. 가 다 : 보상계획은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토지 편입 내역

공사명: 종암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예정 면적(㎡)				소유자	
	면	리				계	경작	제방	포락	주소	성명
1	미원	종암	537	유	1,035	39			39	청주시 수동 444-6	청원농지 개발조합
2	미원	종암	451	답	3,022	39	39			종암리 368	김현중
3	미원	종암	615-9	유	3,057	188		59	129		국(건설교통부)
4	미원	종암	647	도	1,742	788		761	27		국(농림부)
5	미원	종암	646	구	2,608	536		536			국(농림부)
6	미원	종암	534-1	도	1,035	16		16			충청북도
7	미원	종암	530-2	유	847	835		277	558	청주시 수동 444-6	청원농지 개발조합
8	미원	종암	533-4	도	787	2		2			충청북도
9	미원	종암	533-2	도	423	56		56			충청북도
10	미원	종암	612-1	도	2,354	75		75		종암리 476	김선익
11	미원	종암	534-2	전	626	149	149			청주시 수동 444-6	청원농지 개발조합
12	미원	종암	532-3	도	757	413		413			충청북도
13	미원	종암	421	답	3,114	969	969			종암리 476	김선익
14	미원	종암	621	도	1,248	96		96			국(건설부)
15	미원	종암	530-3	유	118	106	106			청주시 수동 444-6	청원농지 개발조합
16	미원	종암	531-3	유	83	17		17		청주시 수동 444-6	청원농지 개발조합
17	미원	종암	529-2	도	1,381	789		789			충청북도
18	미원	종암	530-1	유	1,002	10		10		청주시 수동 444-6	청원농지 개발조합
19	미원	종암	530-7	도	66	13		13			충청북도
20	미원	종암	530-8	도	75	68		54	14		충청북도
21	미원	종암	615-1	유	1,174	1,068		393	675		국(건설 교통부)
22	미원	종암	419-2	도	1,378	1,258		1,221	37		충청북도
23	미원	종암	412-1	임	221	222		137	85	북일면 초정리 284	영동민세양우 공피초정종중
24	미원	종암	529-1	대	625	33		33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52	류지형
25	미원	종암	무지번			76		76			

토지 편입 내역

공사명: 증암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예정 면적(㎡)				소유자	
	면	리				계	경작	제방	포락	주소	성명
26	미원	증암	412-2	전	367	226	226			북일면 초정리 284	영흥인씨양무공파초정종중
27	미원	증암	634-17	도	86	40		32	8		국(건설부)
28	미원	증암	634-15	도	75	47		47			국(건설부)
29	미원	증암	526	대	294	53	53			증암리 436-1	김영애
30	미원	증암	422-2	도	2,599	109		109			충청북도
31	미원	증암	426-4	대	688	231	231			증암리 305	덕수이씨진사공파문종
32	미원	증암	426-3	임	202	214	163		51	증암리 305	이재부
33	미원	증암	426-2	전	406	250	250			증암리 305	덕수이씨진사공파문종
34	미원	증암	525-2	임	94	83	60		23	증암리	조한기
35	미원	증암	525-1	전	2,071	361	361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90-16	민경학
36	미원	증암	396	답	3,022	426	426			증암리 305	덕수이씨진사공파문종
37	미원	증암	524-8	전	363	292	292			미원면 대산리 56	신호식
38	미원	증암	639	도	10,083	2,242		1,774	468		국(농림부)
39	미원	증암	395	답	2,607	805	805			증암리 305	이재부
40	미원	증암	524-6	전	2,546	521	521			증암리 283	송태호
41	미원	증암	524-2	임	5	5			5	증암리 370-2	신영우
42	미원	증암	524-1	임	10	10	10			증암리 305-2	송창규
43	미원	증암	522-2	임	7	7	7			인천직할시 서구 석남동 452-34	이호승
44	미원	증암	615-6	구	951	46		29	17		국(농수산부)
45	미원	증암	521-2	임	139	127	88		39	증암리 287	조경희
46	미원	증암	384-1	답	2,132	672	672			증암리 288	조경희
47	미원	증암	521-1	전	361	102	102			증암리 287	조경희
48	미원	증암	521-6	도	126	55		55			충원군
49	미원	증암	521-7	도	255	62			62		충원군
50	미원	증암	521-8	도	39	39			39		충원군

토지 편입 내역

공사명: 증암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예정 면적(㎡)				소유자	
	면	리				계	경작	제방	포락	주소	성명
51	미원	증암	615-4	구	5,162	415		4	411		국(농수산부)
52	미원	증암	453-1	도	437	198		7	191		청원군
53	미원	증암	452-1	도	65	65			65		청원군
54	미원	증암	634-1	도	239	28			28		국(건설부)
55	미원	증암	344-5	도	739	386			386		청원군
56	미원	증암	344-6	도	1	1			1	증암리 287	송종우
57	미원	증암	341-3	도	2	2			2	증암리 368	신달호
58	미원	증암	340-5	도	2	2			2		국(재정경제부)
59	미원	증암	340-4	도	56	56			56		청원군
60	미원	증암	337-3	도	432	64			64		청원군
61	미원	증암	351	답	2,512	91	91			청주시 봉명동 141	의령남씨 응수파종중
62	미원	증암	337-4	도	1,334	648			648		청원군
63	미원	증암	346	답	1,935	425	425			증암리 510	민치만
64	미원	증암	615-3	구	2,169	13		2	11		국(농수산부)
65	미원	증암	336-2	도	266	186		3	183		청원군
66	미원	증암	336-1	도	158	10		3	7		청원군
67	미원	증암	334-8	도	1	1			1	증암리 305	옥수이씨진사 팔파문중
68	미원	증암	334-6	도	8	6			6	증암리 305	이종국
69	미원	증암	616	도	3,312	185		24	161		국(건설부)
70	미원	증암	319-1	도	419	202		51	151		청원군
71	미원	증암	334-5	도	8	7			7	증암리 305	이종국
72	미원	증암	338	답	1,174	38	38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520-2 신화아파트 1동710	권호영
73	미원	증암	335	답	1,852	65	65			증암리 476	김선익
74	미원	증암	334-4	도	106	106			106	증암리 305	이종국
75	미원	증암	334-7	도	1	1			1		청원군

토지 편입 내역

공사명: 증암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예정 면적(㎡)				소유자	
	면	리				계	경작	제방	포락	주소	성명
76	미원	증암	333-5	도	50	38		18	20	증암리 514	김산건중
77	미원	증암	333-6	도	349	349			349		청원군
78	미원	증암	638	구	10,617	8,067		899	7,168		국(농림부)
79	미원	증암	332	답	3,354	345	345			증암리 476	김선익
80	미원	증암	639	도	10,083	116		116			국(농림부)
81	미원	증암	316-3	도	233	40			40		청원군
82	미원	증암	316-5	도	59	44			44		청원군
83	미원	증암	330-2	전	4,141	298	298			괴산군중평읍대동1	송순철
84	미원	증암	330-1	임	80	71		71		증암리 283-2	이상득
85	미원	증암	630	도	208	24		24			국(건설부)
86	미원	증암	330-6	도	4	4		4			청원군
87	미원	증암	329-1	전	1,149	4	4			증암리 281	송종만
88	미원	증암	329-3	도	356	4		4			청원군
89	미원	증암	329-4	도	674	21		21			청원군
90	미원	증암	537	유	1,035	660			660	청주시 수동 444-6	청원농지 개발조합
91	미원	증암	536-2	유	235	200			200	청주시 수동 444-6	청원농지 개발조합
92	미원	증암	536-1	유	149	85			85	청주시 수동 444-6	청원농지 개발조합
93	미원	증암	535-2	유	40	29			29	청주시 수동 444-6	청원농지 개발조합
94	미원	증암	535-1	유	3,574	102	102			청주시 수동 444-6	청원농지 개발조합
소 계			94필지		38,349	10,673	814	1,157	8,702		

지장물 편입내역

소재지		종별	구조	보상대상수량	소유자		
리	지번					성명	비고
중앙		건물	슬래브	64.25㎡	중앙리 426-4번지	이병창	
			가작	24.00㎡			
			가작	8.75㎡			
			가작	17.50㎡			
			가작	14.00㎡			
			가작	24.00㎡			
			가작	3.00㎡			
		화장실	콘크리트	8.75㎡			
		느티나무	50년생	1 그루			
		느티나무	15년생	1 그루			
		대추나무	10년생	1 그루			
		모과나무	5년생	1 그루			
		옥련나무	5년생	1 그루			
		향나무	5년생	1 그루			
		엄나무	5년생	10 그루			
		두릅나무	5년생	50 그루			
장돛대	콘크리트	4.50㎡					
수도		1식					
마당	콘크리트	66.30㎡					
비닐하우스	철근	102.50㎡					
중앙		건조기	조립식	9.0㎡	중앙리 526번지	김원영 (298-0802)	
		창고	컨테이너	6.0㎡			
		냉동보관기	조립식	9.0㎡			
중앙		인상	4년근	2071.0㎡		만영덕	
중앙		인상	2년근	212.0㎡			
중앙		비닐하우스	철근	539.0㎡	중앙리283번지	송태호	
중앙		비닐하우스	버섯재배	247.5㎡			

청원군공고 제2007-254호

토지수용재결 신청사항 열람공고

청원군 강내면 월곡리 241-15번지일원 군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15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재결 신청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07년 3월 2일

청 원 군 수

1. 토지수용재결 신청 사항

- 사업의 명칭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군계획시설(도로)사업
- 위 치 : 청원군 강내면 월곡리 241-15번지 일원
- 사 업 기 간 : 2005. 6 ~ 2007. 8. 30
- 사업 시행자 : (주)새롬씨엔디 이옥현 (주소:서울 송파구 가락동 112번지)
(주)다존건설 김종문 (주소:서울 강남구 역삼동 659-6번지)

○ 토지수용재결 신청 토지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수용면적	비 고
계	1필지		1,130㎡	1,130㎡	-(주)새롬씨엔디 시행면적: 978㎡ -(주)다존건설 시행면적 : 152㎡
1	청원군 강내면 월곡리 241-15	답	1,130㎡	1,130㎡	-(주)새롬씨엔디 시행면적: 978㎡ -(주)다존건설 시행면적 : 152㎡

2. 열람공고 기간 : 2007. 3. 2. ~ 2007. 3. 16. (15일간)

3. 기타 관련서류는 청원군청 도시과☎ (043)251-3179)에 비치하고 있으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괴산군공고제 2007-106호

등록·폐기 공인 공고




괴산군공인조례 제8조 및 제15조에 의거 등록·폐기한 공인을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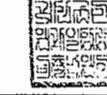
2007. 2. 23.










괴 산 군 수



1. 등록공인 최초사용일 및 폐기공인 폐기일 : 2007. 2. 23.
2. 공인등록 및 폐기사유 : 괴산군행정기구 개편
3. 등록·폐기 공인명 및 인영 :

《등록공인명 및 인영》




부서명	등록 공인명	인 영	비 고
행정과	괴산군행정과 분임징수관인		
	괴산군행정과 분임경리관인		
	괴산군행정과 일상경비출납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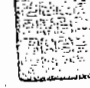
부서명	등록 공인명	인 영	비 고
복지 여성과	괴산군복지여성과 분임징수관인		
	괴산군복지여성과 분임경리관인		
	괴산군복지여성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문화 관광과	괴산군문화관광과 분임징수관인		
	괴산군문화관광과 분임경리관인		
	괴산군문화관광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민원과	괴산군민원과 분임징수관인		
	괴산군민원과 분임경리관인		
	괴산군민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부서명	등록 공인명	인 영	비 고
산림 환경과	괴산군산림환경과 분임징수관인		
	괴산군산림환경과 분임경리관인		
	괴산군산림환경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건설재난 관리과	괴산군건설재난관리과 분임징수관인		
	괴산군건설재난관리과 분임경리관인		
	괴산군건설재난관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균형 발전과	괴산군균형발전과 분임징수관인		
	괴산군균형발전과 분임경리관인		
	괴산군균형발전과 일상경비출납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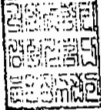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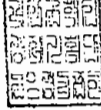

부서명	등록 공인명	인 영	비 고
지역 경제과	괴산군지역경제과 분임징수관인		
	괴산군지역경제과 분임경리관인		
	괴산군지역경제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폐기 공인명 및 인영》

부서명	폐기 공인명	인 영	비 고
종합 민원실	괴산군종합민원실 분임징수관인		
	괴산군종합민원실 분임경리관인		
	괴산군종합민원실 일상경비출납원인		

부서명	폐기 공인명	인 영	비 고
자치 행정과	괴산군자치행정과 분임정수관인		
	괴산군자치행정과 분임경리관인		
	괴산군자치행정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문화 체육과	괴산군문화체육과 분임정수관인		
	괴산군문화체육과 분임경리관인		
	괴산군문화체육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복지 환경과	괴산군복지환경과 분임정수관인		
	괴산군복지환경과 분임경리관인		
	괴산군복지환경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부서명	폐기 공인명	인 영	비 고
산림 관광과	괴산군산림관광과 분임징수관인		
	괴산군산림관광과 분임경리관인		
	괴산군산림관광과 일상경비출납원인		
건설과	괴산군건설과 분임징수관인		
	괴산군건설과 분임경리관인		
	괴산군건설과 일상경비출납원인		
재난안전 관리과	괴산군재난안전관리과 분임징수관인		
	괴산군재난안전관리과 분임경리관인		
	괴산군재난안전관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부서명	폐기 공안명	인 영	비 고
혁신경제 기획단	괴산군혁신경제기획단 분임정수관인		
	괴산군혁신경제기획단 분임경리관인		
	괴산군혁신경제기획단 일상경비출납원인		

음성군 공고 제2007-44호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및 재등록 공고

음성군 공인조례 제8조 및 제15의 규정에 의거 공인과 전자이미지 공인을 폐기 및 재등록 하였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27일

음 성 군 수

1. 폐기 및 재등록 사유 : 마멸
2. 재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 2007. 3. 2.
폐기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의 폐기 연월일 : 2007. 3. 2.
3. 폐기 및 재등록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폐기 공인명	인영	재등록 공인명	인영
음성군 보건소장인		음성군 보건소장인	
음성군보건소 물품출납원인		음성군보건소 물품출납원인	

4. 폐기 및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폐기 공인명	인영	재등록 공인명	인영
음성군 보건소장인		음성군 보건소장인	



※ 이 도보의 판매가격은 1,720원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